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86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마포주민편익시설은 마포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 공간 제공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
- 나. 현재 해당 시설은 안정적 운영과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 나. 위탁기간 : 3년 ('25년 12월 30일 ~ '28년 12월 29일)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시설, 주민 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위탁 운영이 필요함

라. 위탁사무 내용

-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 및 관리
- 주민 이용자의 소통체계 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편익 증진
-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마. 시설개요

- 시설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0
- 규모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 4,773 m^2
- 주요시설 : 목욕탕,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헬스장, 독서실 등
- 준공년월 : 2009. 12.
- 이용대상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

○ 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사. 소요예산 : 운영비 지원 없음(자립형으로 시설이용료 수익금으로 운영)

아.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로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민간 운영을 통한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활성화 및 이용 확대 기대
- 서울시 별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7384, '25.7.1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마포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강수연 (☎2133-3679)